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5일, 문정복 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6.27.) 상정,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6.30.)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7.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교육위원회(2025.7.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문정복 의원)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됨.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최근 신규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불용 등 지방교육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바,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세원의 불안정성과 지역 간 재정 자립도 격차가 큰 상황에서 안정적인 무상교육의 제공을 위해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이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첫째, 특례 규정의 지속적인 연장은 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

려가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특례 규정에 대한 의존은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둘째, 2025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지방교육재정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부칙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 증액교부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셋째, 2024년 특례 규정 연장 논의 당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의견과 같이, 학생 수 감소와 교부금 증가 추세를 들어 별도의 증액교부 없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문정복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서지영 의원)

향후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의 비용부담에 관한 의사결정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여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